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보험 사업 관련 보고·서류 제출 요구 근거 신설〉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27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722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의무보험 사업 관련 보고·서류 제출 요구 근거 신설(안 제27조 제2항 신설 등)	2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2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04.

3. 회 부 일 : 2026. 3. 0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의무보험 사업 관련 보고·서류 제출 요구 근거 신설(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생략) <u><신설></u>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
제4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u>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신설></u>	제4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u> <u>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생략)	<u>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2.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7조¹⁾는 보험회사 등이 의무보험²⁾에 따른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제43조³⁾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정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사고의 최소 피해보상을 보장(사망·후유장애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미가입시 운행 불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할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정한다.

1.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2.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행위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등에 출입하여 업무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등에 한정된 규정으로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의무보험 사업 전반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에게 구분경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요구 또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무보험은 현행법 제3조4)에 따른 운행자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금융감독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활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

핵심 제도로써 그 재원의 건전한 운용은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보고·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조⁶⁾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⁷⁾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제3항제3호⁸⁾에서 보고 및 서류

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당한 경우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9조(과태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국토교통부)

의무보험 사업의 건전한 운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의무보험의 재원은 타 사업으로의 전용 방지 및 엄격한 회계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기대되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도 동의함.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는 보험료 등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을 공지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8)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이에 금융위 등에 기 제출한 자료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출
요구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에 위임할 필요 있음.

또한, 타 법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과
태료를 미부과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75